

<p>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4조 관련 별표중 별정직 7급 정원란 “5”를 “6”으로 하고, 동 정원내용란에 VTR편집요원 1을 신설하며, 별정직 소계 정원란 “22”를 “23”으로 한다.</p> <p>기능직 10등급 정원란의 “29”를 “33”으로 하고, 동 정원내용란중 지방운전원 2를 삭제하고, “지방사무보조원(타자)12”를 “지방사무보조원15”로 하며, “지방사무보조원(필기)3”을 “지방사무보조원(필기)6”으로 하며, 기능직 소계란 정원 “55”를 “59”로 하고, 총계 정원란 “153”을 “158”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hr/> <p>2. 서울특별시地方公務員訴請審查委員會費用辨償條例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3. 서울特別市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p> <p style="text-align: center;">(15時 35分)</p> <p>○議長 白昌鉉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訴請審查委員會費用辨償條例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3項 서울特別市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 이상 2件를 一括上程합니다.</p> <p>(議事棒 3打)</p> <p>內務委員會所屬 許 淑議員님 나오셔서 審查結果를 一括해서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p> <p>○許 淑議員 尊敬하는 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內務委員會所屬 許 淑議員입니다.</p> <p>오늘 이 자리에 本議員은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訴請審查委員會費用辨償條例改正條例案과 서울特別市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審查報告를 드리고자 나왔습니다.</p> <p>地方公務員法 第7條第4項에는 人事委員會 實費補償 根據가 있고, 같은法 第14條第3項에는 訴請審查委員會 實費補償 根據가 있습니다.</p>	<p>그러나 현행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訴請審查委員會費用辨償條例는 訴請審查委員會 費用辨償規定만 있을 뿐 人事委員會은 現職 公務員들만으로 構成되어 費用辨償根據가 어느 條例에도 없었습니다. 93年 12月 27日 法律 第4613號로 地方公務員法 改正法律이公布施行되게 됨에 따라서 人事委員會의 委員으로 公務員뿐만 아니라 法官, 檢事, 辯護士, 大學校의 教授, 初·中·高等學校 校長, 20年 以上勤續한 退職公務員들을 人事委員으로 委嘱할 수 있도록 되어서 費用辨償條例의 必要性이 提起되어 訴請審查委員과 人事委員會의 實費補償規程을 단일의 條例로 統合하고자 우선條例의 名稱부터 改正해서 서울特別市地方公務員訴請審查委員會費用辨償條例에서 서울特別市人事委員會 및 訴請審查委員會費用辨償條例로 改正하고, 會議에 出席한 委員에게는 豫算의 範圍안에서 日費를 支給하며, 委員이 公務로 旅行할 때에는 2級 地方公務員에相當하는 旅費를 支給할 수 있는 根據 等이 规定되었습니다.</p> <p>다음으로 서울特別市表彰條例는 同 條例 第8條第1項을 改正하고자 하는 것으로 現行條例 第8條第1項에는 表彰狀, 賞狀 및 感謝狀 等의 書式이 別紙 1號 내지 別紙 4號書式으로 條例에 规定되어 있어서 別紙 1號 내지 4號 書式을 刪除하고 이를 市長이 定한대로 改正해서 歷史的 記念性이 높은 事業이나 主要行事, 事件 等의 象徵을 시의적절하게 表彰狀 等에 反映해서 市民의 關心과 參與를 擴大하고 時代의 史籍으로 保存하기 위하여 改正 提案된 것입니다.</p> <p>當 委員會에서는 이 두 案件에 대하여 深度 있는 審查를 한 바, 改正함이 타당하다고 思料되어서 原案可決하고 오늘 本會議에 報告하게 된 것입니다.</p> <p>보다 상세한 것은 配付하여 드린 訴請審查委員會費用辨償條例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와 서울特別市表彰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查報告書를 參考하여 주시고, 當 委員會에서 審查報告한 내용대로 議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p>
--	--